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30344 배당이의

원 고 [redacted]공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1. A

2.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8. 10.자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8,734,860원을 0원으로, 피고[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1,265,1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0,352원을 171,010,352원으로 경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이 C 등에 대한 [redacted]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2187호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2007. 10. 25.경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7차전13755호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사건에서도 2017. 6. 29.경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52,37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0. 11.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A는 1996. 12. 18.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redacted]지방법원 1996. 12. 19. 접수 제650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redacted]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2018. 8. 10.경 피고 A에게 배당액 58,734,860원, 피고 [redacted]시에게 배당액 1,265,140원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에 이의하였다.

라. C는 1996.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2006. 10. 12.경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팔리면 즉시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변제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6. 9. 20.경에도 6,0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약 20년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여서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 남양주시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92838(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1996. 12.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피고의 C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C가 원고에게 2006. 10. 12.경 및 2016. 9. 20.경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C의 채무승인으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소는 위 채무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부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5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북도 [redacted]시 [redacted]구 D

대 1273㎡

2. [redacted]북도 [redacted]시 [redacted]구 E

답 3419㎡ 끝.